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072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의 잉여전력량의 상계거래 시 부가 가치세 과세특례 신설(송재봉의원안)	3

I. 개요

1.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07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송재봉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11. 29.
- (3) 회 부 일 : 2024. 12.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한 자가 자가소비 후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하는 경우 송전한 전력량만큼을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은 이처럼 상계에 의한 거래 방식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에 대해서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계된 전력량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과세취지에 맞지 않으며,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정책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량 이하의 전기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상계(相計)전력 거래 방식으로 전력을 송·수전함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의 공급가액

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11 신설).

II. 검토의견

1.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의 잉여전력량의 상계거래 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신설(송재봉의원안)

현 행	개정안
<신 설>	☐ 신·재생에너지의 상계 전력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신설(안 제106조의11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량 이하의 전기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발전을 하는 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상계(相計)에 의한 전력거래 방식으로 전력을 송·수전함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불포함

* 송재봉의원안 2024. 11. 29. 발의(의안번호 6072)

☐ 개정안은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상계(相計)에 의한 전력거래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고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 2005년 2월부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가소비목적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한 가구(이하 “자가발전가구”)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송전 전력량에서 한전에 역송전하는 잉여전력량¹⁾을 상계²⁾하는 거래방식

1)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발전설비용량 10kW 이하인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한 자가 자가소비 후 남은 전력을 “잉여전력량”이라 함

인 요금상계거래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현재 전기요금은 한전이 송전한 전력량과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가 한전에 역송전하는 잉여전력량을 별도로 계량하여 상계 처리 후 요금을 청구하고, 부가가치세는 상계처리 이전의 송전전력량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음.

[자가발전가구 요금상계거래 제도]



주: 자가발전가구는 비사업자로 한전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음

자료: 기획재정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18조 제1항3)(상계에 의한 전력거래)에 따라 발전설비용량 10kW(다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1000kW) 이하의 비사업용 발전설비에서 생산되어 자가소비하고 남은 전력(발전전력)은 한전에서 공급받은 전력(수전전력)과 상계처리하여 요금을 계산하도록 되어있음.

2)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같은 액수만큼 소멸

3)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18조(상계에 의한 전력거래) ① 발전설비용량 10kW 이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전기발전보일러(전기저장장치·전기자동차시스템의 경우 총 충·방전설비용량이 10kW이하인 것을 말한다) 설치자는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계기등(이하 "수전용 전기계기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1000kW 이하로 한다.

전기는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사업용 태양광 설치 가정은 낮 시간에 발전전력을 한전에 보내고, 그 외시간의 경우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형태임.

한전은 수전전력과 발전전력을 모두 계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태양광 설치가정은 수전전력이 발전전력보다 크고 이런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익월 차감 또는 현금으로 지급받음.

그러나, 과세관청에서는 태양광발전 설치 가정에서 발전한 발전전력과 수전전력의 상계거래 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4)에 따른 가액의 합계액으로,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⁵⁾

예를 들어, 수전전력 500kW, 발전전력 300kW인 경우 전력사용량요금은 200kW로 계산되지만, 공급가액은 500kW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전력기금은 공급가액의 10%, 3.7%를 각각 적용하고 있음. 이에 전력요금 고지서는 200kW에 대한 전력사용량요금에 500kW에 대한 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 및 전력기금으로 청구되고

4)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5) 2009. 7. 14., 국제청 법령해석질의·답변 (법규부가 2009-0258)

있음.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첫째, 한전의 송전 전력량보다 자가발전가구의 역송전력량이 많은 경우 청구요금이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어 자가발전가구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⁶⁾

2023년 기준으로 약 30만가구가 한전에서 공급 받은 전력량 보다 한전으로 역송한 잉여전력량이 많아 전기요금은 0원인데 부가가치세는 10억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나고 있음.

[상계 거래 후 전기요금 0원 자가발전가구의 부가세 현황]

구 분	고객호수(월평균)	부가가치세(월평균)
2020년	205,160가구	538,299,582원
2021년	226,382가구	592,096,649원
2022년	279,839가구	839,165,357원
2023년	299,484가구	1,094,043,234원
2024년 6월	156,837가구	590,092,171원

자료: 송재봉의원실 보도자료(한국전력공사 제출)

둘째,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개인 소비자는 전력의 특성상 저장이 어려워 잉여전력량이 발생하면 한국전력공사에 보내고, 전력을 소비할 때는 자기가 생산한 전력이 부족하면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형태임. 이처럼 전력의 생

6) 수전전력량보다 발전전력량이 더 많은 자가발전가구의 경우 전기요금이 0원(실제 최소기본요금 1천원 부과)이나, 부가가치세와 전력기금만 부과되는 상황임. 2018년 전기요금과 공급가액의 차액이 가장 큰 가구를 보면 전기요금은 1,000원인 반면, 공급가액은 1,481,329원으로 부가세와 전력기금만 20만원이 넘게 납부되고 있음. 이렇게 실제 청구요금과 부가가치세가 부합하지 않아 자가발전가구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산과 소비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잉여 생산과 부족 소비가 반복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셋째, 현행 상계처리 이전의 송전전력량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과세체계는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정부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즉,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나 사용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약해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보급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첫째, 한전과 자가발전가구간에 전력을 소비대차⁷⁾에 따라 주고받고 있는데, 이러한 교환계약에 따라 자가발전가구가 한전에 잉여전력을 공급한 것과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은 것은 각각 별개의 거래라고 볼 수 있음.

즉, 한전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자로부터 송전받은 전력은 해당 발전설비 설치자가 생산한 전력으로 한전이 공급한 재화를 다시 받는 환입재화(반품)로 볼 수 없다는 것임.

둘째, 전기요금의 경우 한전과 자가발전가구는 상호 주고 받을 대금이 있어 요금 산정 시 상계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의 경우 자가

7) 당사자 일방이 금전 또는 기타 물건의 소유권 등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은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발전가구는 한전으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에 대해서는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고, 자가발전가구는 비사업자로서 한전에 공급한 전력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를 하지 않아, 상계하는 전기요금과 달리 부가가치세는 한전이 자가발전가구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할 것만 있으므로 상계 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임.

셋째, 상계 시 동일전력량을 송전받는 일반가구와 비교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예) (일반가구) 300kWh 송전받음·사용 → 전기요금 약39천원, VAT 3.9천원
(자가발전가구) 300kWh 송전받음·사용, 100kWh 자가발전, 한전에 송전
→ (현행) 전기요금 약20천원, VAT 3.9천원 / (개정안) VAT 2.0천원

예를 들어, 일반가구와 자가발전가구 모두 300kWh의 전기를 송전받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가구는 전기요금은 39,000원, 부가가치세는 3,900원임.

반면, 자가발전가구는 300kWh를 송전받아 사용하고, 100kWh를 자가발전하여 한전에 송전했기 때문에 순소비전력은 200kWh임.

현행법에서는 발전전력과 수전전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가구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3,900원이 부과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상계된 전력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자가발전가구의 부가가치세는 2,000원으로 조정되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또한, 현재도 동일 전력량을 소비하는 동일 규모의 가구와 비교할 때, 자가발전가구가 자가발전으로 충당하여 한전으로부터 더 적은 전력량을 공급받으므로 한전으로부터 받는 전력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더 적음.

예) (일반가구) 500kWh 사용·송전받음 → 전기요금 약92천원, VAT 9.2천원
(자가발전가구) 500kWh 사용, 300kWh 송전받음, 200kWh 자가발전
→ 전기요금 약39천원, VAT 3.9천원

예를 들어, 일반가구와 자가발전가구 모두 500kWh의 전기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가구는 500kWh를 사용하고 송전받은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 92,000원, 부가가치세 9,200원이 부과됨.

반면, 자가발전가구는 300kWh를 한전으로부터 송전받아 사용하고, 200kWh를 자가발전하여 총 500kWh를 사용하므로 전기요금은 39,000원, 부가가치세는 3,900원이 부과됨.

이는 자가발전한 전력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자가발전으로 충당한 전력만큼 한전에서 받는 전력량이 적어져서,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기획재정부는 상계에 의한 전력거래는 한국전력의 요금징수 편의를 위한 것으로 해당 제도를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47